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 신설·증액 사업의
집행명세서 추가 등〉

■ 권명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22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 신설·증액 사업의 집행명세서 추가 등(안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명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

다. 회 부 일 : 2023.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 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Ⅲ. 검토의견

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 신설·증액 사업의 집행명세서 추가 등(안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산보고서 작성 시 추가경정예산 관련 사항 기재 - 결산보고서 작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신설·증액된 내용·집행결과 명확화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 신설·증액 사업의 집행명세서 추가

개정안은 결산보고서 작성 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라 함)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경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현행 결산보고서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추경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집행결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020년 ~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구분		확정예산	편성 목적
2020년도	제1회	11.7조원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
	제2회	12.2조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3회	35.1조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제4회	7.8조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2021년도	제1회	14.9조원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 약화 지원
	제2회	34.9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지원
2022년도	제1회	16.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 지원
	제2회	39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장 및 방역·민생 대책

또한 본예산과는 별개로 추경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가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 제공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예산과 구분하여 추경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결산 보고서에서 세출예산액과 세출예산현액의 변동 부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집행 시 해당 집행액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예산과 추경은 별개의 예산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경 편성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나 중요도 등이 본예산 편성 시와 달라지는 등 별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결산보고서에 부속서류 25종¹⁾을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추경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실익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집행과정에서 본예산과 증액예산을 명확하게 구

1)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채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분하기 어렵고, 추경 집행명세서 작성을 통한 집행결과를 구분할 실익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 신설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결산보고서로도 구분이 가능하며,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현행법에 따라 많은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추경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법 개정 실익에 비해 과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 <u>.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 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의 작성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u>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